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은 '04년부터 신규 증차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수요 변화에 맞춘 탄력적인 차량 운영이 어렵고 차량의 실소유자인 차주와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운송사가 경영 위수탁계약을 맺고 지입료를 지불하는 지입에 따른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구조를 지입제에서 직영제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위탁하지 않고 직영조건으로 운영 시 공급기준의 예외로 증차를 허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로 2024년 12월 18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044-201-4017, 팩스 044-201-5601)

※ 행정예고안의 전문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